

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120일
신청인	성명			주민등록번호	
	전화번호			본인과의 관계	
	주소				
본인 인적사항	성명	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	
예방접종의	예방접종의 종류				
내용	접종 장소			접종 일시	
진료비			간병비		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2.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 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특별자치시장·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 수·구청장 확인 사항	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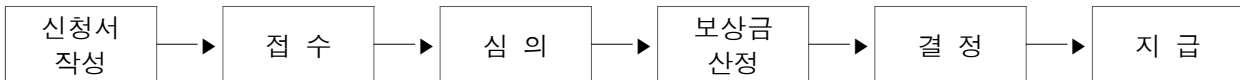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